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년 9월 15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8월 19일

나. 제 출 자 : 강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9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27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0. 9.15.)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 제안이유

상위법인 「국가배상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2) 「주민등록법」 제36조

3)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5.22.~6.1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 배금택)

가. 개정 취지

○ 행정안전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요청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

○ 아울러「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상위법령인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금 초과액의 변상 범위 개정(안 제5조제2항)

- 기존 변상책임에 따른 보험가입금액 초과시 담당공무원의 변상 부담을 고의·중과실 있는 경우에 한해 초과액을 변상하도록 범위를 한정함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외래어 표기" 등을 일괄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 직위포괄계약방식(제3조제1항 관련)

- 담당자 개인별 기명계약방식이 아닌 업무별로 포괄 계약하는 방식

다.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변상액이 보험가입금액의 범위를 넘는 초과액에 대해 무조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에 대해,

○「국가배상법」규정에 따라,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개정함으로써 담당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경감시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 이와 함께 어려운 용어정비 등 자치법규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관계 법령**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36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이나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